

雙梅堂 李詹의 역사서술

정 구 복

I. 머리말

II. 생애

III. 사상

IV. 역사서술

V. 맺음말

I. 머리말

필자는 수년 전에 「동국사략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첩의 사론을 소개한 바 있다.¹⁾ 그 후 은사인 김용섭 선생님께서 연세대도서관에 『쌍매당집』이 입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이첩의 문집 끝부분인 권 22~25까지의 복사본이었다.²⁾ 이에는 이첩의 역사서술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실려 있었다. 그 후 국립도서관 소장본(1926년 간)의 신평 이씨 족보에서 '이첩의 유적'이란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첩에 대하여는 『고려사』에 실린 그의 열전, 세가의 기록,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동문선』의 자료를 합치면 상당한 자료가 전하는 셈이다. 필자는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1988년 6월 한국사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당진군 신평지역에 조사를 나가 그 후손들로부터 『쌍매당집』 권 1~2의 필사본과 1722년에 편찬된 신평이씨 구보³⁾를 얻게 되었다. 문집

1) 정구복, 「東國史略에 대한 史學史的 考察」, 『역사학보』 68, 1975.

2) 이 문집의 원명칭은 『雙梅堂先生 鑑藏文集』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쌍매당집』으로 약칭하겠다.

3) 이는 신평 이씨의 두번째 족보편찬으로 86세의 李道炯이 편찬한 것이다. 자녀를 출생 순으로 기록한 점, 庶子女를 밝혀 모두 실은 점, 외손가닥까지 수

권 1의 서두에는 년보와 총목차가 실려 있어 그의 생애와 저술 내역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첨은 고려말 조선초의 대학자요 문장가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고려왕조 유지에 노력하였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의 자료는 대체로 부실하게 전한다.⁴⁾ 그리고 조선 초기의 관찬사서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고려말 정치적 사건이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이를 바로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단 한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⁵⁾

본고는 이첨이 편찬한 사서의 내용과 그 특징,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함에 주목적을 두었다. 자료를 제보하여 주신 김용섭 교수님, 당진읍의 이석찬씨, 그리고 신평 이씨 문중의 여러분, 조사를 함께 나갔던 노상복 교수님에게 중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II. 생 애

이첨은 1345년(충목왕 원년)에 洪州의 속현이었던 新平縣⁶⁾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정직을 지냈고 이첨 대에 와서 과거를 통하여 출세함으로써 가문을 크게 일으켰다. 아버지는 李趣⁷⁾였으며 이첨의 字는

록한 점에서 조선 전기의 족보 기록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한 흔적을 역력히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에서는 고려조까지 소급하여 선대의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에는 최충헌이 찬하였다는 李德明의 비문을 실고 있으나 이 자료는 족보 편찬에 이용되지 않았다.

- 4) 그 예로 鄭夢周의 『圃隱集』, 河崙의 『浩亭集』, 元天錫의 『耘谷集』 등을 들 수 있다.
- 5) 姜美蘭, 「이첨의 椿生傳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1986.
- 6) 『高麗史』 地理志에는 新平縣이 洪州牧의 속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속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 149, 홍주목 참조.
- 7)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 9, 태종 5년 3월 을축조의 그의 졸년 기사에는 아버지를 贈議政府參贊 熙祥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족보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 족보에는 趣 또는 允이라고 적고 있다. 熙祥은 改名이 아닌가 싶다.

少叔⁸⁾이고, 호는 雙梅堂이며, 본관은 신평이다.⁹⁾

이첨은 13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¹⁰⁾ 그의 가족은 어머니와 그보다 몇살 위인 누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가족은 신평에서 경남 창녕군 계성면으로 이사를 갔다.¹¹⁾ 아마 그곳에 외가가 있었던 듯하다. 19세 때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누님은 영광으로 시집을 갔는 바 누님과 의 정은 대단히 깊었고 먼 후일 누님이 죽음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쓴 제문에는 그의 생애 연구에 관한 귀중한 내용이 실려 있다.¹²⁾

21세 때(1365, 공민왕 14년)에 이첨은 성균관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이 때의 시험관은 典理判書 韓蔽(호는 恕齋)이었는데 바¹³⁾ 이후 30년간 은문으로 모셨다. 그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3년째 되던 해에 성균관 친시에서 7명 중 장원으로 급제하였다.¹⁴⁾ 이 무렵은 신돈이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전횡하던 때이어서 신돈은 이제현과의 혐오관계로 인하여¹⁵⁾ 그 보복적인 조치로 과거를 중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삼관에서¹⁶⁾ 글을 짓는 관료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하여 왕은 성균관에 나가 9齋에서 친시를 베풀었다.¹⁷⁾

- 8) 위의 실록 기사에는 中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족보류의 문중 기록에는 모두 少叔으로 기록되어 있다.
- 9) 『고려사』의 그의 열전 및 실록의 졸년 기사에는 다 같이 洪州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평 이씨 족보에 인용된 癸酉年(1393) 李上垣의 准戶口에 본관이 신평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첨 당대에 이미 본관은 신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생애당집』 권 24, 先考墳祭文 참조.
- 11) 위의 책 권 24, 祭亡姉文 참조. 桂城은 당시 靈山縣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7, 영산현 유적조 箕谷谿堂記).
- 12) 이 글은 1401년에 지어진 것으로 자신의 관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13) 앞의 책 권 24, 恩門韓相國路祭文, 권 25, 恩門韓相國祝壽齋疏 및 『고려사』 권 74, 지 28 선거지 2, 國子監試 공민왕 14년조 참조.
- 14) 『고려사』 권 73, 지 27 선거지 1, 選場조 참조.
- 15) 신돈이 등용될 때에 이제현은 그의 골상이 흉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신돈은 이제현이 座主 門生을 칭하여 그 문생들이 관료를 독점하는 폐단을 들어 과거를 중지시킨 바 있다.
- 16) 三館은 文翰을 담당하던 藝文館, 春秋館, 典校寺를 말한다.
- 17) 이 때의 卷讀官은 이색(1328~1396)이었다. 족보류에서는 이로 인하여 이색

그는 곧 바로 명예로운 예문관 檢閱에 임명되어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修撰, 供奉으로 승진하였고¹⁸⁾, 공민왕 19년(1370)에는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간관직인 右正言에 승진하였다. 이때 그는 왕에게 건의하여 조회에 사신을 입시시켜 사초를 충실하게 기록하게 하였고, 각 관서에 명하여 기록문서를 춘추관에 보내게 하였으며, 육부와 대간의 관료로 하여금 六衙日에 친주토록 하였다.¹⁹⁾ 이는 신돈의 전횡으로 인하여 언로가 폐쇄되고 역사기록이 또한 부실함을 타개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사절요』에는 이 건의문을 기록하고 이어서 그가 신돈을 비판하지 못하고 고작 그런 건의를 하였다고 비판하는 “史臣曰”의 사론을 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정적이었던 정도전(1337~1398)과 정충(1358~1397)이 조선 건국 후 『고려국사』를 편찬할 때에 쓰여진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²⁰⁾

간관직에 종사한 그는 마침내 신돈과 충돌하게 되었다. 공민왕 20년(1371) 6월 신돈이 탐오한 金剛을 재상에 임명하려 하자 그는 告身狀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이때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였다. 즉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舍同正을 지냈을 뿐인데 나는 정육품에까지 올랐다.”라고 말하였다.²¹⁾ 이는 여기에서 관직생활이 끝날 것을 각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知通州事로 좌천되었다.²²⁾

우왕이 즉위하자 그는 다시 간관직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권문세족이었던 李仁任(?~1288)과 충돌하였다. 왜냐하면 이인임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신흥 명나라와 맺었던 외교관계

을 은문이라 기술하고 있으나 친사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18) 『쌍매당집』 권 1의 년보 참조.

19) 『고려사절요』 권 29, 공민왕 20년 12월조 참조.

20)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三英社, 1981), pp. 172~3.

21) 『고려사』 권 117, 열전 30, 이철전 참조.

22) 위와 같음. 통주는 강원도 통천이다. 그는 통주에 재임시 상평보를 만들어 흉년에 대비한 바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名宦條 참조.

에서 원나라와의 친선의외교로 전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는 당시 신흥 유자들로부터 맹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金九容(1338~1384), 李崇仁(1349~1392), 鄭道傳, 權近(1352~1409), 鄭夢周(1337~1392), 朴尙衷(1332~1375) 등이 反明 親元 정책에 맹렬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右獻納이었던 이침은 全伯英과 함께 이인임을 목베 것을 상소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이침은 知春州事로 좌천되었고 그 해 가을에는 杖을 맞고 河東에 유배되었다가 2년 후에 유배에서 풀려났다.²³⁾

권문세족인 이인임이 專橫한 우왕 재위 10여년간 그는 재야인으로 지냈다. 단지 우왕 10년(1384)에는 鄭地(1347~1391) 장군 휘하에서 왜구 격퇴에 협력한 바 있을 뿐이다.²⁴⁾ 이인임, 任堅味(?~1388) 일파가 崔瑩(1316~1388)에 의하여 우왕 14년(1388) 정월에 정계에서 숙청되자 이침은 다시 증양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 해 3월 최영이 攻遼作戰을 수행할 때에 그는 예문관 待制로서 권근과 함께 서경에서 왕을 호종하였다.²⁵⁾

요동정벌에서 回軍한 이성계(1335~1408)는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권, 군권,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물로는 정도전, 趙浚(1346~1405), 尹紹宗(1345~1393), 吳思忠(1327~1406) 등을 들 수 있다. 趙仁沃(?~1396), 南闔(1354~1398)은 곧 바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뜻을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에게 진의하였으나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²⁶⁾ 그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였다. 즉 그들의 행동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정적만을 제거하고 중도적인 관료는 포섭하면서 통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구세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갔다.

23) 『雙梅堂集』 권 24, 祭亡婦文.

24) 『쌍매당집』 권 24 및 『東文選』 권 63의 上鄭相國書 참조.

25) 『陽村集』 권 5 및 『동문선』 권근의 詩, 路上 鑑折李待制贈皮條以詩爲謝 참조.

26) 『고려사』 권 116, 열전 29 南闔傳.

이들이 맨처음 들고나온 문제는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어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왕손을 추대한다는 명분으로 우유부단하고 용렬한 공양왕을 추대하였다. 또한 그들은 창왕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어 함께 회군한 曹敏修(?~1390)를 축출하고 당시 학계와 정계의 거두이었던 李穡(1328~1396)을 권좌에서 밀어 냈다.

회군 직후 혁명파에 의하여 전제개혁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준에 의하여 제기되어 고려가 멸망하기 전인 공민왕 3년(1391)에 단행되었는 바 표방된 명분은 私田을 몰수하여 국고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창왕이 즉위한 다음 해(1389) 3월에 都評議使司에서 전제개혁론이 논의되었다. 이때에 전제개혁을 반대한 자들을 모두 권문세족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온당한 해석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정 보완적인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철저한 개혁은 왕실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성격울 띠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 관계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평의사사 회의에서 이색은 舊法을 경솔히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李琳(?~1391), 禹玄寶(1333~1400), 邊安烈(?~1390), 권근과 柳伯濡가 분명히 반대하였다. 정몽주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고, 정도전, 윤소중 등이 조준의 안에 찬동하였다. 이 회의에서 개혁안은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개혁에 대한 의견을各司의 관원에게 물었다.²⁷⁾ 이때 의견을 진술한 자가 53명이었는데 이 중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10의 8~9 나 되었다.²⁸⁾ 나머지 사람들은 개혁을 원치 않았는데 그

27) 이에 대하여는 『고려사』 조준 열전과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었는 바 이 전제개혁 과정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절요』가 사료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고려사』에는 이 기사가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였다”고 고쳐 쓰여져 있다.

28) 이 사료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 즉 개혁에 찬동한 사람을 18~9명으로 보는 견해이다. 필자와 같이 해석한 것은 金庠基,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6), p. 788 및 『고려사』 번역본 10책,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p. 4 등이 고 후자로 해석한 경우는 한영우,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기반」, 『한국

들은 모두 巨室子弟였다고 한다.²⁹⁾ 즉 전제개혁을 원하는 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과 소수의 반대자는 권문세족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에 각사 관원들 중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은 권문세족이었겠지만 적어도 도평의사사에서 반대한 사람은 왕조를 존속시키려는 뜻에서 반대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양왕이 즉위한 이래 사대부 계열은 혁명파와 중흥파로 나뉘어 그 대립이 더욱 노골화하였다. 이 무렵 왕명을 짓는 知製敎의 직을 겸하고 있었던 이첨의 관력은 이 시기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첨은 공양왕 원년(1389) 11월에 간관직인 右常侍(正三品)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혁명파의 주동 인물인 윤소종이 상위직인 左常侍에 임명되었으므로 언론활동은 그에 끌려가는 편이었다. 즉 2개월 후인 공양왕 2년 정월에 郎舍 윤소종, 이첨 등이 상소하여 邊安烈(?~1390)이 우왕을 영립하려 하였다 하여 처형을 주장한 이후 남사의 상소가 몇 차례 계속되어 洪永通(?~1395), 禹玄寶(1333~1400), 判三司事 王安德(?~1392), 贊成事 禹仁烈(1337~1403), 判慈惠府事 鄭熙啓(?~1396) 등의 고관들을 변안렬 사건과 연루시켜 처형할 것이 주장되었다. 이들은 우왕대의 고관들로서 이들의 제거는 혁명파의 정권 장악상 필요한 조치였으므로 이 때의 간쟁활동은 주로 윤소종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³⁰⁾

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3), p. 45,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p. 53, 및 이정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86), p. 82~3 박용운, 『고려시대사』 下, (일지사, 1987), p. 578 등이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은 한문 문리로 보아 잘못된 해석이다.

29) 『고려사절요』 권 34, 공양왕 원년 4월조.

30) 이 밖에도 혁명파에서는 이승인, 권근을 축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승인은 왕과 이인임에게 아부하였다는 것이 주 이유였고, 권근은 이승인을 구원하려다가 미움을 샀고, 또한 권근은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창왕 원년(1389) 9월에 돌아올 때에 명나라 禮部 咨文을 몰래 뜯어 보았다고 하여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 명나라 외교문서는 도평의사사에 보고될 때에 이미 변개되었다. 즉 당시 왕인 창왕이 왕손이 아니어서 왕위에 있음은 부당하다고

그러나 이침과 윤소종이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공양왕 2년(1390) 정월에 경연이 부활되어 두 사람이 함께 講讀官에 임명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왕은 『貞觀政要』를 읽고자 하여 知經筵事 정몽주로 하여금 그 서문을 講하게 하였다. 그러자 윤소종은 군주가 二帝 三王을 본 받으려 하여 야지 당 태종을 본 받으려 해서는 안되므로 『大學衍義』를 講하게 하여 帝王의 이치를 밝힐 것을 건의하여 『정관정요』의 강을 중지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침은 공양왕에게 2년여 동안 『정관정요』를 강하였고³¹⁾ 또한 왕에게 당 태종의 정치에 관한 帝範을 써서 바쳤으며, 공양왕에게 올린 정치적 교훈인 九規의 상소문에서도³²⁾ 당 태종을 본받아 중흥을 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³³⁾ 그가 『정관정요』를 대단히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혁명파의 사대부들은 고려왕조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한 불교신앙을 배척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는 典法判書 趙仁沃(?~1396)³⁴⁾이 위화도 회군 이후인 우왕 14년(1388) 12월에 불교 억제론을 제기한 이래 공양왕 2년(1390) 2월 왕이 僧 榮英을 왕사로 임명하자 윤소종과 대사헌 成石璘(1338~1423)이 불교 배척론을 들고 나왔고, 정도전도 불교배척론을 폈으며, 성균관 유자들에 의하여 불교배척론이 과격하게 주창되었다. 즉 성균관 대사성 金仔粹는 공양왕 3년(1391) 5월에 왕이 演福寺를 수리하고 부도탑을 건립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불교 신앙은 효험이 없고 生民에게 화를 끼쳐 망국을 재촉한다고 주장한 이후, 성균 생원 朴礎, 성균 박사 金紹는 앞으로 머리를 깎는 자를 죽여 버리라고 과격한 상소를 올렸다. 이에 왕은 노하여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자 하여 그 처벌 죄목을 찾을 때

고쳐졌다. 추측컨대 권근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로 말미암아 그 죄를 뒤집어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31) 『고려사절요』 권 35에 의하면 3년 10월에 경연에서 이침이 『정관정요』를 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공양왕 2년 11월에 올렸다. 『고려사절요』 권 35 참조.

33) 『고려사』 권 117, 열전 30, 李詹傳 七曰 比類조 참조.

34) 조인옥은 위화도 회군 즉시 典法判書로서 전제 개혁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첨은 선왕의 국법을 破毀시켰다는 죄목을 적용시키자고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이첨은 자신이 불교를 신봉한 것은 아니지만 왕조의 유지를 위하여 불교 신앙의 배경을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색이 성리학 보급을 위하여 성균관 교육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부처님은 성인이라고 인정한 점과 이색에 의하여 동방 理學의 祖라고 칭찬을 받은 바 있는 정몽주가 능엄경을 읽고 있다고 정도전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서도³⁵⁾ 중흥파의 사상 경향이 혁명파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첨이 고려왕조의 유지를 위하여 진력한 것은 그가 공양왕 3년(1391) 12월에 왕의 비서기관인 密直司의 知申事에 임명된 이후의 일이었다. 이 전인 왕 2년 5월에 명나라에서 돌아온 趙胖에 의하여 尹彝, 李初가 明 황제에게 告한 사건의 내용이 전해졌다.³⁶⁾ 이에 의하여 혁명파에서는 왕이 두둔하고 있었던 이색, 변안렬, 이충인, 권근 등을 탄핵하여 청주옥에 감금하고 국문을 하였다. 윤이, 이초의 고변 내용은 당시 간관이었던 金震陽(?~1392)이 “3살 먹은 아이도 믿지 않을 誣告”라고 말하였듯이³⁷⁾ 이는 혁명파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양왕은 이색 등을 처벌하라는 혁명파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중흥파의 의견을 쫓았다.³⁸⁾ 이로 인하여 혁명파는 이색 등의 처벌을 더욱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그러자 대간과 형조에서는 왕 3년 9월에 정도전을 탄핵하여 봉화에 유배 보냈고, 이어서 조반을 竹林³⁹⁾으로 유배 보냈다. 그 반면 이색과 이충인을 유배에서 소환하였다. 당시의 정국을 주도한 자는 정몽주이었다.⁴⁰⁾ 다음 해인 4년 3월에는 간관 김

35) 『三峰集』 권 3, 上鄭達可書 참조.

36) 趙啓禧, 「조선 건국과 尹彝・李初사건」, 『李丙燕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참조.

37) 『고려사절요』 권 34, 공양왕 1년 6월, 憲府 上疏曰 참조.

38) 조계찬, 앞의 논문, p. 456.

39) 『역주 고려사』에서는 지금의 고성으로 부기하고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고려사』 지리지, 固城縣조에는 죽림부곡이 기술되어 있다.

진양, 李擴 등이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중, 南在(1351~1419), 趙撲(1356~1408) 등을 탄핵하자, 知申事인 이첨은 왕의 결재를 받아내 이들을 유배키로 하였다.

이는 혁명파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자 이를 제거하려는 중흥파의 마지막 정치투쟁이었다. 그러나 정몽주가 李芳遠에 의하여 피살됨으로써 혁명파의 조선 전국운동은 급진전되었다. 그 해 4월 이첨은 고향 근처인 홍성 結城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나 조선이 건국되자 다시 杖 70을 맞고 光州로 유배되었다. 그 후 곧 從便되어 靈山縣(지금의 창녕)⁴¹⁾으로 돌아가 한가한 생을 보냈다.

이후 그는 그 곳에서 3년을 지내다가 태조에 의하여 서울로 불러 왔다. 태조와는 그가 밀직사의 知申事로 있을 때에 私邸에서 두번 만난 적이 있었고 태조는 그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회유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조 3년(1394) 맹인 점장이 興茂 사건에⁴²⁾ 연루되어 함포에 유배되었다가 그 해 10월에 사면되었다. 태조 5년 1월에 태조의 부름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그때 관찰사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그는 실무를 모른다고 하여 이를 사양하고⁴³⁾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이를 3권으로 요약하면서⁴⁴⁾ 소일하였다.

40) 정몽주는 당시 대간과 형조에서 쫓겨난 우왕을 영립하려한 자와 윤이 이초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왕에게 탄핵하였을 때에 왕은 守門下侍中 정몽주, 門下評理 尹虎(?~1393), 柳漫溚(?~1398), 大司憲金湊(?~1404) 등을 불러 의논하였는 바 정몽주의 의견에 따라 조민수, 변안렬은 家産을 籍沒하고 李乙珍 등 3명만 조처하고 그 외는 모두 사면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고려사절요』 권 35, 공양왕 3년 9월조). 동왕 4년 2월에 정몽주는 그가 편찬한 법률을 바쳤는 바 이는 고려왕조의 지속을 위한 배려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첨은 이를 왕에게 10일간 강한 바 있다.

41) 주 11 참조.

42) 이 사건은 興茂에게 세자와 元子の 수명을 물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太祖實錄』 권 5, 태조 3년 甲戌 3월 丙午조).

43) 『쌍매당집』 권 24, 祭亡婦文. 이에 의하면 태조는 그를 진라관찰사에 임명하려 하였다.

44) 위의 책 권 22, 三國圖後序 참조.

그가 조선의 신정권에 참여한 것은 태조 7년(1398) 7월에 吏曹典書 集賢殿直學士 知製敎에 임명되면서 부터이다. 그는 세자 즉 후일 定宗으로 부터 군주의 정치에 관한 요체를 經史에서 뽑아 바치라는 명을 받고 그 해 12월에 『四書節要』를 찬진하였다. 이 무렵 그의 사상 경향은 성리학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당시의 文翰은 하륜, 권근과 이첨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려말에는 고려 중흥파에 속하여 조선 건국에 반대한 사람들이었으나 신정권의 회유에 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문장력이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에서 회유에 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첨은 정종 2년(1400) 11월에 신왕의 즉위를 알리는 사명을 띠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 왔고 태종 2년(1402)에는 하륜, 권근과 함께 삼국사를 편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동년 10월에 명나라 成祖 永樂帝의 등극을 축하하러 하륜과 함께 명에 갔다가 이듬해 4월에 돌아왔으므로 편찬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였다.⁴⁵⁾

그는 태종 5년(1405) 3월에 61세로卒하니 관직은 知議政府事였고, 文安이란 시호를 받았다. 당시의 사관은 그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天資가 重厚하고 학문에 힘써 글을 잘 하였으며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⁴⁶⁾

요컨대 그는 14세기 말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예문관 관료로 출발하여 간관직에 있을 때에는 신돈과 이인임 등 집권파와 투쟁하여 그 결과 관직에서 쫓겨나 우왕 재위 14년 동안을 시골에서 야인으로 살았으며, 위하도 회군 이후 혁명파가 정권투쟁을 벌이는 와중에서는 간관 및 왕의 비서로서 왕을 扶護하여 왕조의 유지에 진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신왕조가 확고히 수립되자 그는 이에 참여하여 그의 학문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는데⁴⁷⁾ 이는 당시 학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지위에

45) 정구복, 「동국사략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역사학보』 68, 1975, p. 5.

46) 『태종실록』 권 9, 태종 5년 乙酉 3월 乙丑조.

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생의 절반은 유배생활을 하였고 절반은 관료 생활을 하였다. 그가 쓴 글은 그가 죽은 후 곧바로 아들 少畜에 의하여 25권의 문집으로 출간되었다.⁴⁸⁾

Ⅲ. 사 상

1) 정치사상

그의 정치사상은 본질적으로 당시 지도층의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내지는 性理學的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의 급진적인 개혁에 반대하고 고려 왕조를 존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사람이므로 그의 사상에는 혁신적인 사상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대한 고찰은 당시 고려 왕조의 존속을 원했던 사람들의 사상 내용을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의 정치사상을 주로 담고 있는 九規의 상소문이 『고려사』의 그의 열전과 『고려사절요』에 전문 그대로 실려 있는 점에서⁴⁹⁾ 당시 정치사상의 한 면을 대표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九規는 공양왕 3년 11월에 올린 것이다. 이 때는 개혁파가 대간과 형조에 의하여 탄핵되어⁵⁰⁾ 왕도 이를 밀어내려고 태도를 굳히고 있었던 점

47) 태종 2년에 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 『쌍매당집』 연보 참조.

48) 중종 7년(1512)의 홍문관 소장도서에 『쌍매당집』이 보이므로 그 이전에 출간되었다(『중종실록』 권 16, 중종 7년 壬申 9월 丁丑조).

49) 이밖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九規의 항목명이 인물 이점 조에 소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9, 洪州牧, 동국문화사, p. 314.

50) 공양왕 3년 9월에 정도전은 平壤府尹에 임명되어 지방으로 쫓겨났고, 이어서 대간과 형조의 탄핵을 받았다. 그 죄목은 사헌부 糾正을 유혹하여 대간을 비난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尹彝 李初의 고변 사건을 본국에 고한 趙胖도 탄핵되어 처벌되었으며, 정도전은 그의 출신이 부정하다는 명목으로 다시 탄핵 받았다.

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으로 제시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고려 중흥과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九規에 나타난 정치사상은 정치의 주체를 군주로 파악하고 있다. 군주 시대에 이러한 사상은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투쟁이 군주를 움직여야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군주의 養德이다. 이의 主內容은 음식과 언어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천하의 財貨를 씀에 있어서도 절약하면 정치가 잘 되는 근본인데 후세 사람들은 왕왕 이러한 근본이 없이 다스려지기를 구할 줄만 알고 임금을 바르게 할 줄을 모르며, 허물을 규제할 줄만 알고 덕을 기를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왕이 경연관의 충고를 따르면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薰陶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둘째로 건의한 항목은 慮事이다. 이에서는 일을 처리함에 신중하게 할 것과 일에는 첫 시작인 幾를 잘 헤아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幾는 행동의 시작이며 선악이 나뉘어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잡히는 느낌이 있지만 이를 더욱 잘 살펴야 일의 차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남에게 화목을 줄 수 있으며 예약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항목은 공양왕의 성격을 의식하여 한 충고이며 또한 정치적 처리의 근본 원리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항목은 改過이다. 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를 고치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왕의 말을 대신이 불가하다고 하면 마땅히 살펴서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일의 처리에 대간이 불가하다고 하면 자기의 견해를 버리고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주의 자리는 萬民의 위자리이고 일국의 영화를 누리는 자리이어서 교만, 사치, 방탕하기 쉬운 점을 경계한 것이다.

네째 항목은 敦本이다. 만물에는 모두 근본이 있는 바 근본을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仁을 행함에는 孝悌가 근본이고, 유

교의 모든 경전의 근본은 誠이고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養民의 근본은 농업이며 모든 정사와 법제의 실시에는 信이 근본이니 이러한 근본을 철저히 인식하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명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信은 법령의 지속적인 실시임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왕 자신이 겸허하게 행동하라는 謙己, 어짐을 베풀되 가까운 인척부터 차례로 넓혀 나가고 이를 실시함에는 과단성 있게 하라는 施仁, 당 태종의 정치와 비교하여 그와 비슷한 점, 다른 점을 헤아려 중흥을 일으키라는 比類, 상벌을 공정하고 준엄하게 하라는 明政을 주장하고 있다.⁵¹⁾

마지막 아홉째 항목은 保業이다. 이 내용은 국가를 오래된 큰 집에 비유하여 이를 지키는 정책을 개진한 것이다. 그 방법은 집을 자주 살펴서 기운 것은 바로 잡고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면 비록 천백년이 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의 기초는 국가로 말하면 백성이고, 기둥과 주춧돌은 禮와 法이며, 대들보는 대신이고 서까래는 관료이며, 담장은 장수이고 빗장은 병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 여섯 가지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리고 祖宗의 成法을 삼가 지켜서 태만으로 이를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中興의 業을 이룩하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 九規에 보이는 그의 정치사상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는 개혁보다는 守舊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다시 혁명과들이 제기한 전제 개혁과 행정의 타락과 부패등의 척결, 불교 신앙의 탄압 내지는 배격에 대하여는 주의를 회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²⁾ 이는 왕조를 존

51) 이 내용은 바로 직전에 정몽주가 올린 상소문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고려사절요』 권 35, 공양왕 3년 7월조). 그러나 정몽주가 재상 등과 함께 올린 이 상소문은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정치적 사건을 빨리 종결지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이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올린 글의 목적과 상소물 올린 시기의 상황의 차이에 연유할 것이다.

52) 물론 이침도 無名の 지출과不急한 일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네번째 항목인

속시키려는 보수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사상은 당 태종의 『貞觀政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⁵³⁾ 『貞觀政要』는 고려 초기에 光宗이 즐겨 본 책이었고 또한 崔承老(927~989)가 成宗에게 읽으라고 권장한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고등의 정치술이 담겨진 것으로, 군주가 신하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였음과 신하는 또한 군주에게 소신을 굽힘없이 적언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책은 공양왕에게 이 책을 2년 이상이나 講한 바 있고⁵⁴⁾ 이 九規에서도 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즉 당 태종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여 국가의 중흥을 이룩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당 태종의 시대와 당시의 시대가 다른 점을 유의하여 조처하기를 강조하였다. 혁명파의 윤소중 같은 이는 『정관정요』를 비판하고, 眞德秀가 『大學』의 내용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달아놓은 『大學衍義』를 경연의 교재로 쓸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대학연의』는 군주의 마음공부를 하는 입문서로서 성리학적 견해가 담겨져 있다. 즉 혁명파의 사대부들은 성리학 이론에 있어서 중흥파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적인 견해를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즉 定宗 때에 『四書』를 요약하여 왕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⁵⁵⁾ 그가 태조에게 바친 것으로 판단되는 正心論에서는⁵⁶⁾ 『大學』의 핵심사상이

敎本에 보이고는 있으나 그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53) 제 7 항목인 比類에 보이고 있다.

54) 『고려사절요』 권 35, 3년 10 월조에 그가 經筵에 참여하여 『정관정요』를 강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九規의 제 7 항목인 比類 조에서 2년간 왕이 이 책을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연보에 의하면 그는 경연 강독관이 된 이후에 계속 경연관직을 兼帶하고 있다.

55) 定宗 즉위년 12월에 左政丞 趙浚, 兼大司憲 趙瑬, 政堂文學河崙, 中樞院學士 李詹, 左諫議大夫 趙肅, 奉常少卿 鄭以吾 등이 찬진하였으나 (『태조실록』 권 15, 정종 즉위년 12월 己未조), 이는 이첩이 吏曹典書로서 편찬의 명을 받았다. 따라서 이 작업은 이첩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판단된다.

56) 『쌍매당집』 권 22, 正心論. 이 글이 쓰여진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글의 서두에 왕의 즉위 초에 便民事宜 32조를 반포하였다는 내용에서 이는 태조 원년 7월 이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고 있다. 九規에서는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을 군주의 몸이라고 말하였으나⁵⁷⁾ 正心論에서는 군주의 마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의 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입장이 바깥에서 온 것으로 시대적 추세에 따른 변화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그의 정치사상 중 핵심적인 것을 살펴 보았으나 그의 문집 권 20과 21에 실려 있는 상소문 9통과 狀啓 45통, 劄子 8통 등을⁵⁸⁾ 얻어 볼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연구는 극히 일부의 측면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자료가 발굴되면 보완하겠다.

2) 사회사상

『쌍매당집』에는 그의 사회사상의 일부를 유추할 수 있는 契에 관한 8통의 글이 전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문집에는 흔하지 않은 자료이기에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다. 이 8통의 契 문서 중에서 고려시대의 것이 7통이고 남은 한 통이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1번의 三益契는 학문을 넓히는 동시에 덕업의 권장과 과실의 상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친목제이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이로운 친구 삼인이라는 데에서 계의 명칭을 따온 것으로 直友는 좋은 일을 責備하여 용서치 않는 자를 뜻하며, 諒友는 올바른 것을 고집하여 바꾸지 않는 자, 多聞友는 많은 것을 알아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를 가르킨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 아마 이는 같은 스승 아래서 함께 수학한 동료의 모임인 듯하다.⁵⁹⁾

2번의 患信契는 신료로 있을 때 맺은 계로서⁶⁰⁾ 이는 동지적 모임의 계

57) 九規 제 4항 敎本 조에서 “論一己則 身爲理天下之本”이라 하였다. 『고려사』 이침 전 참조.

58) 『쌍매당집』 권 1~2의 앞에 붙여진 목록에 의하면 이밖에도 陳言 1통, 表 4통, 箋 59통이 더 있다. 그리고 序文 33통(권 16), 說 16통(권 15), 記 36통(권 17~8) 등의 자료가 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9) 『쌍매당집』 권 23, 三益契文 참조.

명 칭	契 員	契의 목적	기타사항
1. 三益契 2. 忠信契	학문적 동료 동료 약간인	過失相規, 德業相勸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際以信, 德業相勸 過失相規, 患難相教 孝悌忠信을 躬行함	直友, 諒友, 多聞友
3. 觀善契 4. 論取契	同業學文, 同事仕 宦 학문적 동지	相與德業以勸 當急難無或遺棄 학문만 논하고 시정의 득 실과 남의 장단점은 논 하지 않기로 함	相觀而善之 평생의 友好를 맺음 論學取友 顯名恩義, 事君忠, 事親孝, 朋友信
5. 友仁契	성균관 동창	부귀빈천에 학문을 포기 하지 않고 聖訓의 실천 에 서로 힘쓰고 尊賢親親 의 道로서 致君澤民의 근 본으로 삼기를 맹서함	1366~68년에 결성됨
6. 丙午甲契	1366년의 성균관 시험에 함께 합격 했던 사람들	군주의 보필과 백성의 구 제에 臣職을 다하고 勉 德, 規過, 敦信, 恤難에 먼저 배필되 뒤서지 말 것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성된 생년월 순으로 앉은 차례를 정함 합격자는 96명 이었음
7. 鄉黨契	幕府에 함께 근무 한 같은 郡 출신의 2~3명	형제의 우의를 약속함 敬老尊賢, 恤孤慈幼, 患 難救之, 疾病扶之, 서로 배필되 뒤서지 말 것	1384년 경에 결성
8. 恩信契	佐命功臣 60여명	無忘上賜, 盡忠頗信, 慶 善弔恤, 勵行規過	1400년 경 이첨 자신 은 계원이 아님

라 할 수 있다. 그 계의 내용은 행동을 忠實히 하여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 규약으로는 군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동료 간의 믿음을 실천하며 덕업의 축하와 과실의 상호 규제, 患難에 서로 돕는 일이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

60) 위의 책, 忠信契文에서 今吾齊輩若干人 相與有雅 而同爲王臣 則有兄弟之義 不待要約 已同心也라고 쓰고 있다.

는 관료들의 결사로서 어려운 일이나 정의로운 일을 할 때에 조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단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3번의 觀善契는 이침이 관료로 있을 때에 뜻을 같이하고 학문을 같이 하는 동료와 맺은 것으로⁶¹⁾ 평생의 우호적인 점을 보아 그 계원은 많은 수에 달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동지 몇 사람의 모임었던 것 같다. 계원 상호간의 결속력은 대단히 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현재의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 계의 규약이 孝悌忠信을 힘써 실천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 것은 평생계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4번의 論取契는 친구가 절차탁마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나 남의 장단 점은 이야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점으로⁶²⁾ 보아 그의 나이가 젊었을 때에 조직한 계인 듯하다. 더구나 세력과 이익을 구하는 당시의 무리들이 식사를 같이하고 술을 마시며, 억지로 웃으며, 악수하고 즐기는 세태를 비판한 점과 앞으로 학문만 논하자는 취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학문을 포기하지 말자는 표현은 이 계의 결성시기가 그의 소년기임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렇게 볼 때 그 계원의 수는 몇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번의 友仁契는 우리들이 어깨를 맞대고 국학에서 함께 있다는 표현과⁶³⁾ 학문을 講함에서 이미 만났으니 善을 취하여 仁에 보태면 덕이 날로 高明해지고 切磋의 공부가 자신에게 더욱 이롭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⁶⁴⁾

61) 위의 책, 觀善契文에서 某等 共生一世 同業學文 同事仕宦 且同心而樂 爲之契 以結平生之好라고 쓰고 있다.

62) 위의 책, 論取契文에서 然謂之論學 則所論者學爾 其若時政之得失 他人之長短 非所議也 라고 쓰고 있다.

63) 위의 책, 友仁契文에서 某等 比肩齊業 同游於國學 齒與學文 相若也라고 쓰고 있다.

64) 위의 책, 위 글에서 沉友所以輔仁 既講學而會之 當取善以輔之 則德日進於高明 切磋之功 誠有益於己矣라고 쓰고 있다.

이는 그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에 동료 학생들과 맺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문의 발전과 행동의 지침을 정하여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모임으로 계원의 동질성이 높고 그 수가 96명의 성균관 시험 합격자의 상당수일 것임으로⁶⁵⁾ 규모가 대단히 큰 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를 결성한 목적은 친목을 위한 것이었다.

6번의 丙午甲契는 그가 성균관시험에 합격한 해에 함께 합격했던 사람들의 계이다. 이 계가 이루어진 때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이는 계원 중에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本科의 과거에 함께 합격한 사람도 있고 벼슬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한 표현에서⁶⁶⁾ 확인할 수 있다. 이 계는 친목계이었으며 때로는 은문인 韓蔽도 초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이는 座主門生の 관습과 표리의 관계를 가진다. 계원은 96명 중 수십명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과거합격자의 계와 성균관 동창계인 우인계는 그러한 선택이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번의 鄉黨契는 그가 幕府에서 근무할 때에 마침 같은 郡 출신을 객지에서 만나 결성하였다. 2~3명이 형제의 友誼를 맺고 禮俗의 실현에 힘쓸 것과 상부상조를 할 것을 계약으로 정하였다. 이 계가 맺어진 때는 우왕 10년(1384)에 鄕地 장군의 막부에서 근무할 때로 추정된다.

65) 공민왕 14년 10월의 국가감시에서는 古賦詩로 55명, 十韻詩로 41명이 뽑아졌다. 이들이 모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 시험은 성균관 입학생을 뽑는 시험이었으므로 이들 중 대부분이 입학하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고려사』 권 74, 지 28, 선거지 2 참조.

66) 『쌍매당집』 권 23, 丙午甲契文에서 沉吾輩 俱同年而生 或同遊學 或同科第 或同仕宦 其相須以成者 尙矣라고 쓰고 있어 병오년에 태어난 동갑제인 듯이 표현되고 있지만 병오년은 공민왕 15년(1366)이므로 국가감시에 함께 합격한 사람들의 계임이 확실하다. 그가 합격한 국가감시는 공민왕 14년 10월에 실시되었으나 그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던 것 같다.

67) 태조 원년(1392) 8월에 개국공신의 子孫弟姪들이 결성한 忠孝契는 그러한 예에 속한다. 『태조실록』 권 2, 태조 원년 壬申 10월 丙午 참조.

8번의 恩信契는 태종의 추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佐命功臣으로 책봉하였을 때에 그들이 맺은 계로서 이첩은 비록 계원은 아니었으나 계문의 작성을 위촉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여러 차례 공신이 책봉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계가 많이 결성되었을 것을 유추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⁶⁷⁾

우리나라 계의 기원은 신라의 화랑도라는 결사운동에까지 소급시킬 수 있으며⁶⁸⁾ 이후의 불교도의 결사운동과 연관된다.⁶⁹⁾ 이는 그 목적이 비록 후대의 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는 확실히 계와 동질의 것이다. 계의 명칭을 직접 쓴 최초의 문헌자료는 고려 毅宗(1147~1170) 년간에 庚資諒이 조직한 문무계이다.⁷⁰⁾ 그리고 庚資諒이 말년에 조직한 耆老會도 계라고 볼 수 있으며⁷¹⁾, 그리고 이색의 『목은집』에 계에 관한 기록이 세 군데 보이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계를 달리 서술한 것이다.⁷²⁾ 계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를 漢式으로 표현하면 결사라고 한다. 계라는 표현은 토속적인 표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첩은 8번의 은신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에 이첩은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의 결성에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계는 문무계와 같이 단순한 친목계가 아니라 동지적인 성향이 강한 유교적 덕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 사이의 동지적 결사는 고려 말 정치적 혼란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

68) 화랑도가 서약에 따른 자발적인 조직으로 보는 견해를 인정할 때 이는 결사 단체로 볼 수도 있다.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pp. 356~57.

69) 김문경,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신앙결사』, 사학지 10, 1976 및 채상식, 『고려후기 천태종의 백련사 결사』, 『한국사론』 5, (서울대 국사학과, 1979) 참조.

70) 『고려사』 권 99, 열전 12, 庚應圭, 資諒傳 참조.

71) 위와 같음, 『陽村集』 권 19 後耆英會序 참조.

72) 耆老會와 유사한 모임으로 이 무렵의 李仁老 등의 竹林高會를 들 수 있다.

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역성혁명이 일어날 때에 전 왕조에 대한 충성을 바친 사람들의 행동이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행위로 나타난 점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고려가 멸망할 때에는 신라가 멸망할 때와는 달리 고려왕조를 유지 존속시키려 노력한 일군의 학자관료의 집단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의 형성은 儒者 관료의 결사운동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지적 계는 불교와 유교가 사회사상으로 교체되는 사상적 전환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계에서 보이는 특성은 김필동이 제시한 계에 대한 새로운 범주 설정에 부합되는 것이다.⁷³⁾

이침의 계에는 후대 향약에 나타나는 규약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德業相勸, 過失相規, 患難相恤의 조목이 보여 단지 동지적 유대관계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부상조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비록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결성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약의 선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IV. 역사서술

이침은 태종 2년(1402)에 왕명에 의하여 하륜, 권근과 함께 『삼국사략』을 편찬하는데 종사한 바 있다.⁷⁴⁾ 그런데 『쌍매당집』 권 22에는 그가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자료가 보이고 있다. 즉 태조 5년에 그가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이를 3권으로 정리한 내용이 실려 있

73) 김필동, 「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 『한국사회학연구』 8, 1986, pp. 93~97. 이에서 기왕의 학설을 검토하면서 가설로서 1. 계는 기본적으로 결사체라는 점, 2. 계의 본질은 단체성, 목적성에 있으며 殖利性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 3. 계는 촌락의 범위를 넘어서 촌락적 기반과는 무관하게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74) 정구복, 「『삼국사략』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역사학보』 68, 1975, pp. 4~7.

다.⁷⁵⁾

그가 『삼국사기』를 읽게 된 동기는 고려 왕조가 이미 멸망했음으로 삼국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를 알고 싶은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는 아동의 학습교재로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으나 그 서술 체재나 서술 내용을 대략 살필 수 있다. 이 책은 이후의 『동국사략』이나 『삼국사절요』, 『동국통감』과는 달리 삼국의 역사를 하나의 편년으로 합쳐 쓰지 않고, 삼국의 역사를 각 권으로 요약하였다.⁷⁶⁾ 이는 아마 『삼국사기』의 本紀를 주로 요약한 듯하다.⁷⁷⁾

그리고 이 책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사론적인 총론이 실려 있고 삼국의 疆域圖와 世系圖가 붙여져 있었다. 또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는 사론이 몇 편 첨부되었다. 삼국의 역사를 총론한 사론에서는 시조의 이름과 성, 국호, 수도를 세움과 옮긴 사실, 왕조의 멸망과 존속 년수, 그리고 그 강역에서 일어났던 후삼국의 건립, 멸망, 존속 년수 등이 공통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신라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기사가 간략하게 추가되고 있다.

이 책에는 삼국의 지도가 붙여져 있던 점이 특색이다. 이 지도는 고려 시대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하였던 바 백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의 산맥이 그려져 있었고 강도 그려진 지형지도이었다.⁷⁸⁾ 이 지도를 근거로 하여 삼국의 지도를 나누어 그려 각 국의 역사 첫 머리에 붙였다.

이들 지도에는 원칙적으로 삼국시대의 郡縣名을 기재하였고, 편찬 당시의 군현명을 註로 붙였다.⁷⁹⁾ 고구려의 경우 朔庭⁸⁰⁾ 이북, 평양 이서 지방

75) 이침, 『쌍매당집』 권 22, 三國圖後序 및 東文選 권 92 참조.

76) 이침, 三國圖後序에 按本朝地圖 釐而爲三 各冠篇首라고 쓴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7) 그러나 그가 지와 열전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열전을 참조한 것은 『쌍매당집』 권 22에 題列傳後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志의 이용은 그가 삼국의 지도를 그려 넣을 때에 삼국 당시의 군현명으로 기록한 점에서 확인된다.

78) 이침, 앞의 책, 三國圖後序.

의 군현명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고려시대의 지명을 곧바로 써 넣었다.⁸¹⁾ 백제의 강역은 동으로 走壤⁸²⁾, 북으로 溟河⁸³⁾, 서와 남쪽은 바다에 닿았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의 강역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지명으로 기록한 것을 미루어 보면 압록강 밖의 강역은 축소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만주 지방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부족하였던 데서 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볼 때 백제의 강역이 상당히 넓게 그려졌다고 이해된다. 이는 삼국 중 자료가 가장 적은 백제의 역사를 신라, 고구려와 똑같이 한 권으로 정리한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백제사에 상당한 강조가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고향이 백제의 고토인 신평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어떠한 역사책에 지도를 붙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참신한 발상이었다.

또한 이 책의 서두에는 삼국왕들의 世系圖가 붙여졌다. 신라 世系圖의 뒤에 써 넣은 사론에서는 3姓이 선왕의 遺訓을 어김없이 받들어 일천년 왕조를 유지하였다고 칭찬하면서도 이는 一方의 家法일 뿐 천하에 통용될 수 있는 법은 못 된다고 평하였다.⁸⁴⁾ 이는 조선 초기의 다른 역사가에 비하면 융통성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世系圖에 붙인 사론에서는 태조왕이 오래 산 것은 舜 임금 이래 드문 일이라고 쓰고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고 동생에게 전한 것과 왕이 죽은 후에 시호를 가할 줄을 모

79) 위의 글 및 『쌍매당집』 권 22 題高句麗圖後 참조.

80) 지금의 安邊으로 고구려의 比列忽이 경덕왕 때 朔庭郡으로 개칭되었다.

81) 앞의 책, 題高句麗圖後.

82) 강원도 춘천이 문무왕 때 首若州로 칭해졌는 바 走壤은 이 관내의 지명임 『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9월조 참조.

83) 패하는 대동강을 의미한 듯함.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조 참조.

84) 『쌍매당집』 권 22, 題新羅世系圖後, “凡三易姓而其傳受之際 先誦先王之訓 以爲受命之符 若無疑忌之辭 以基一千年悠久之業 然亦止於一方傳國之家法耳 不足與天下公論也.”

르고 葬地로써 號한 것은 비루한 습속이라고 쓰고 있다.⁸⁵⁾ 백제의 世系圖에 붙인 사론에서는 같은 대수의 왕을 가진 殷나라와 비교하여 백제는 40년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논하고, 殷 나라에는 재위기간이 긴 왕으로 三宗이⁸⁶⁾ 있을 뿐인데, 백제에는 三宗과 같은 왕의 수가 10배에 달한다고 하여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⁷⁾

옛 가야의 땅에 오래 살았던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가야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즉 가락국의 역사에 대하여 건국과 수도의 정함, 10대 491년의 역사를 가졌던 것을 기술하고 있다. 가야사는 『삼국유사』에서도 상당히 중시한 것인 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⁸⁸⁾

삼국의 역사에 붙였던 그의 사론으로 9편이 있었음을 문집에서 찾을 수 있다.⁸⁹⁾ 이들 중 고구려 역사사실을 평한 것이 3편, 신라의 역사사실을 논한 것이 5편이고, 백제사의 경우 위에 소개한 世系圖에 붙였던 사론한 편이 있다.

이 중 3편은 문장이 좀 더 간결하게 정리되어 태종 3년에 하륜, 원근과 함께 찬진한 『동국사략』에 다시 실려 있다. 이들 사론은 필자의 논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⁹⁰⁾ 즉 고구려 慕本王 4년(51A.D.)에 왕이 포학하여 항상 사람을 깔고 앉거나 배고 누웠는 데 그 사람이 혹 움직이면

85) 위의 책 권 22 高句麗世系圖後. “句麗俗習挹婁 不事文字 王薨不知加諡而以葬地號之 何其陋哉”.

86) 은 나라 왕의 재위 년수는 어느 진거에 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 책은 『通鑑外紀』를 참조한 듯하다. 이에 의하면 은 나라 왕 중 宗字를 붙인 임금 은 세사람 뿐으로 三宗은 太宗(太甲 在位 33년), 中宗(75년), 高宗(59년)을 지칭한다. 그런데 33년 이상 在位한 백제왕은 9명이다.

87) 『쌍매당집』 권 22, 百濟世系圖後. “謹按殷三十王合六百二十八年 百濟三十王合六百七十八年 其世代而同 年紀則加四紀焉 殷王享國之久者 止稱三宗 而百濟王之如三宗者 倍蓰焉 此不可不知也.”

88) 『삼국유사』 왕력의 가락국조에서 자료를 취한 듯하다.

89) 『쌍매당집』에는 사론이 권 22에 붙여 실려 있다. 즉 雜錄 조에 사건명을 제목으로 내걸고 실은 것도 있고 題新羅世系圖後라는 식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그러나 문장 형식은 모두 謹按으로 起文되어 있다.

90) 정구복, 앞의 논문, pp. 23~24 참조.

살해하였고 이의 부당함을 간하는 신하까지도 처형하였다는 사실을 비판한 사론과 고구려 태조왕 25년(77A.D.)에 부여에서 뿔이 셋이 난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고구려 왕에게 바치자 이를 상서로운 물건이 생겼다 하여 대사면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비판한 사론, 그리고 신라의 탈해왕 즉위 기사에 붙인 三姓交立에 대한 사론이⁹¹⁾ 그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발견된 6편의 사론은 다음과 같다. 신라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을 세운 기사에 붙인 사론,⁹²⁾ 신라의 孝恭王(897~911)때 대신 殷影이 왕의 嬖妾을 살해한 기사에 붙인 것,⁹³⁾ 신라 定康王(886)이 자신의 후계자로 여동생 眞聖을 세운 처사의 잘못을 논한 것,⁹⁴⁾ 신라에 立傳한 인물이 많은 것을 평한 것과 고구려와 백제의 세계도에 붙였던 2편의 사론이다.

그가 쓴 사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군주의 비도덕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즉 군주와 신하는 한 몸이므로 군주는 신하를 禮와 恩으로 대접하여야 신하도 어려움을 당하면 생명을 바친다고 논하였다. 특히 고구려 慕本王을 가장 포악한 군주로 비판하고 간쟁하는 신하를 射殺한 잘못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둘째 신하로서 올바르지 못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즉 신라의 대신 殷影이 諫해도 왕이 따르지 않자 폐첩을 살해한 것은 그가 비록 임금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군주를 협박한 처사로 옳지 못한 것이었다고 논하였다. 세째 진성여왕을 세운 것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즉 만물의 생성 이치로 볼 때 여자는 몸이 柔順하여 일국의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며 중국에서도 여자가 왕이

91) 이 사론은 題新羅世系圖後로 쓰여진 글이다(『쌍매당집』 권 22 참조).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총론적인 사론이나 『동국통감』에는 탈해왕 원년 조에 실고 있다.

92) 이 사론은 『삼국사절요』 권 12 및 『동국통감』 권 10의 경덕왕 6년조에 권근의 사론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93) 이 사론은 『삼국사절요』 권 14 및 『동국통감』 권 11의 효공왕 15년조에 권근의 사론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94) 이 사론은 『삼국사절요』 권 13 및 『동국통감』 권 11의 定康王 2년조에 권근의 사론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된 경우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고 논하고 왕명을 수행한 大臣 俊興의 학식이 좁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때에는 군주다운 군주도 없었고 신하다운 신하도 없었다고 논하였다. 넷째 요괴한 동물의 출현을 상서로 여긴 것을 비판하고 있다. 즉 상서는 일기가 순조로워 풍년이 드는 것이 최고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상서로운 것이 출현하여도 상서가 아니고 이는 요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다섯째 신라에서 국학을 세운 후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1~2명의 훌륭한 학자가 나왔지만 국학의 설치가 너무 늦어 초기의 정치가 별로 불만한 것이 없다고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왕조의 유지에 관심을 크게 표명하고 있다. 이는 삼국의 세계도에 붙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의 사론에서 여왕이 즉위함의 부당성을 논한 것도 왕조의 유지라는 관심에서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론은 정치적 교훈을 주려는 목적의식에서 쓰였으며, 유가적 시각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보려한 점은 김부식의 유교적 역사관의 발전적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사론에서 발전적 측면은 군주의 전제적 행위를 비판하고 신하의 체통을 강조한 점, 형식적인 天人合一 사상의 수용을 비판한 점, 역사를 왕조 유지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목은 그의 유학적 소양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려말 대간으로서 간쟁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정치적 수난을 당한 그의 현실 체험과 왕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그의 정치적 입장, 당시 민간과 왕실 주변에 깊게 깔려 있던 災異에 대한 신비적인 사상 등에 대한 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사론을 쓰면서 백제의 역사사실에 대하여는 단 한 편의 사론을 쓰고 있다.⁹⁵⁾ 이는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백제의 강역에 대한 그의 인식과 百濟世系圖에 붙인 글의 논지로 미루어 볼 때 백제사를 강조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에게는 신라중심적 역사관에서 탈피하

95) 『쌍매당집』 권 22, 百濟世系圖後.

려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⁹⁶⁾

그런데 그도 참여하여 편찬된 『동국사략』은 신라를 삼국의 정통국가로 서술한 철저한 신라중심적인 사서가 되었다. 이는 하륜과 이첨이 편찬기간 14개월 중 7개월 동안 명나라 사신으로 가 있는 동안 권근에 의하여 그 편찬이 주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국사략』에는 권근이 쓴 사론이 40여편이고⁹⁷⁾ 이첨의 사론이 3편, 하륜의 사론이 한 편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권근의 주도로 편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권근의 주도하에 편찬된 친신라적인 『동국사략』의 역사서술은 세조, 성종 때에 편찬된 『삼국사절요』에 의하여 삼국의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그것이 『동국통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⁹⁸⁾ 그런데 본고에서 새로히 밝혀진 사실은 『동국사략』에 臣等按으로 起文된 사론이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는 權近曰, 李詹曰 식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첨의 사론이 권근의 사론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 4편이나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권근의 『陽村集』에 권근의 작으로 실린 사론 중에도 이첨의 사론을 갖다가 잘못 기록한 것이 발견됨으로⁹⁹⁾ 이에 관한 연구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어떻든 그의 사학사상은 고려 초기의 역사의식 즉 고려가 삼국을 통일

96) 신라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도 사론에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신라는 문헌의 나라라고 쓴 점이라든가(題列傳後 라는 사론), 설총, 최치원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置國學의 사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사론의 결론은 이와 상반되게 내려지고 있다.

97) 정구복, 앞의 논문. 이 논문에서는 권근의 사론을 48편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권근이 쓴 사론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하륜이 쓴 사론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의 문집이 부실하게 전하고 있어 이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98) 정구복, 「삼국사절요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역사교육』 18집, 1975, pp. 104~6.

99) 이에는 이첨이 쓴 고구려 모본왕에 대한 사론, 고구려 태조왕 25년조 부여에서 세 뿔이 난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치자 이를 상서로 알고 사면령을 내린 것에 붙인 사론, 그리고 定康王에 대한 사론 3편이 권근의 사론으로 잘못 실려 있다(『양촌집』 권 34, 東國史略論 참조).

하였다는 의식¹⁰⁰⁾과 강역을 중시하는 의식을 계승하였고 김부식의 유교적 입장에서 삼국사를 이해하려 한 것과 역사에서 정치적 교훈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계승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이룩된 삼국시대 이전의 상고사 인식을 계승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는 『三國遺事』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단군조선에 대한 서술, 가락국에 대한 서술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그의 역사의식은 고려말의 그의 정치적 입장, 중흥파로서의 보수적 정치사상과 상호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그의 천백제적인 역사서술은 그 이유가 비록 온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학사상 특이한 것이다.

그리고 『쌍매당집』에는 단군조선으로부터 기자조선, 위만조선, 四郡, 二府가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그가 후일 『삼국사략』 일명 『동국사략』을 편찬할 때에 정리된 내용인 듯하다.

단군조선 조에서는 주로 『삼국유사』로부터 자료가 인용되고 있다. 『魏書』에서 인용된 부분을轉載하고, 이어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는 사실과 白岳山에 도읍을 옮겼다는 것을 적고 있으나, 백악에 移都한 사실은 그眞否를 알 수 없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唐書』의 裴矩傳 기사까지도 재인용하고 있다.¹⁰¹⁾

箕子朝鮮의 항목에서의 제후에 봉해진 이후 846년간 존속했다고 주를 붙이고 있으며,¹⁰²⁾ 周 武王에 의하여 기자가 봉해진 후 8조의 가르침을 행하여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밤에 집문을 닫지 않았다는 좋은 풍속을 기술한 다음 衛滿에게 나라를 잃고 왕 準이 남쪽으로 도망가 마한

100) 이첨, 三國圖後序에 自三朝鮮以後 率瓜分幅裂以據之 未有定于一者 王氏始祖 躬擐甲冑 火攻水戰 克成統合之功이라 하여 신라의 통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신라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삼국의 부흥국가로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삼국의 世系圖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101) 『쌍매당집』 권 22, 檀君朝鮮. “魏書云 來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或云 都平壤城始稱朝鮮 又移都白岳山 未知是否…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102) 李承休의 『帝王韻紀』에는 41대 928년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을 건국하였다고 쓰고 있다.

고려시대에 箕子가 조선왕에 봉해져 교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국초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¹⁰³⁾ 肅宗 때에는 禮部의 건의에 의하여 기자묘를 찾게 하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한 바도 있다.¹⁰⁴⁾ 이후 유학의 발달에 따라 기자에 대한 인식은 儒者들에게 더욱 보편화 되었다.¹⁰⁵⁾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첨은 기자조선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그는 위만조선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삼국유사』에 보이는 위만조선이 漢 제국에 대하여 벌인 강인한 저항 기사는 삭제되고 단지 손자 우거왕 때에 한 무제에게 망하여 四郡이 설치되었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二府를 기술하고 있어 조선 초기 상고사 인식의 틀을 이에서 볼 수 있다.¹⁰⁶⁾

그런데 4군 조에서는 『漢書』에 쓰여진 應昭의 註를 인용하여 薩水이 남이 漢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고구려 태조왕 때인 후한 광무제라는 설을 인용해 쓰고 있으며, 『新唐書』 註를 인용하여 낙랑은 평양지방, 현도는 동옥저지방이며, 진번, 임둔의 소재지는 모른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상고사에 대한 기술이 『동국사략』에서 어떻게 기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살필만한 자료가 없다. 단지 『동국통감』에 전하는 권근의 사론으로 미루어 보면 이에 대한 서술도 권근에 의하여 수정된 듯

103) 『고려사』에 나오는 기자에 관한 기록은 태조 16년 後唐에서 태조를 책봉한 교서 중에 나오고 있으며 (『고려사』 권 2, 세가 2), 문종 26년에 송에서 보낸 황제의 칙서에도 기자의 책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4) 『고려사』 권 63, 지 17, 禮志 5에 “肅宗 七年壬子朔 禮部奏 我國教化禮儀 自箕子始 而不載祀典 乞求其墳塋 立祠以祭 從之”라는 기사가 있으며 그리고 명종 8년 4월에 西京의 公蔭田柴를 更定할 때에 先聖(기자) 香油田 50結을 책정한 바 있다(『고려사』 권 78, 지 32, 食貨 1).

105) 고려 후기 이규보, 이세현, 이곡, 이색 등의 문집에 기자에 대한 많은 시가 보이고 있다.

106) 조선 초기에 들어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4군, 2부, 삼한의 체계화가 이루어져 이후의 史書에 계승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태종 3년에 撰進된 『東國史略』이 이러한 체계화의 최초의 사서이다. 정구복, 앞의 논문, 참조.

하다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V. 맺음 말

이상에서 살핀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첨은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으로 고려말 조선초기의 文翰을 담당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예문관, 대간, 밀직사의 직을 역임하여 신돈과 이인임세력과 투쟁하였으며, 공양왕 때에는 고려왕조를 유지시키려 한 중흥파의 한 사람이며 후에는 신 왕조에 협력하여 예문관 대제학을 맡기도 하였다.

2) 그는 성리학에 조예가 있었지만 고려말에는 『貞觀政要』의 사상을 통하여 고려의 중흥을 꾀하였다. 그의 중흥사상은 그가 공양왕에게 올린 九規의 상소문에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불교 배척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신앙을 옹호하는 태도를 가졌다. 『정관정요』의 중시와 불교신앙의 묵인은 중흥파의 공통적인 점으로 혁명파와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점이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는 성리학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대학』에 의하여 성리학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3) 그는 유학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동지적인 결사인 계를 많이 결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사는 고려말 왕조유지를 위한 유자들의 집단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결성은 외형적으로는 당시 불교신앙을 위한 결사운동을 계승하였으나 유교적 윤리의 실천과 학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불교의 결사운동부터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계의 규약은 오히려 후대의 향약의 선구적인 것이었다.

4) 그는 『삼국사기』를 요약하여 3권으로 편찬하였다. 이는 아동의 학습교재로 편찬한 듯하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각 권 앞에는 강역도를 붙이고 삼국시대의 군현명을 써 넣었다. 그리고 삼국의 세계도를 붙였다. 그리고 이에는 몇 편의 사론을 써 넣고 있다. 그의 역사서술과 사학사상

에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왕조라는 고려 초기의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상고사의 서술과 가락국의 서술은 『삼국유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건국, 시조의 이름, 수도를 정함과 읍김 등만을 인용하였을 뿐 신화의 내용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그가 쓴 사론은 고려말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체험에 의하여 왕조의 유지, 군주의 도덕성, 신하의 체통 등이 강조되었다. 요컨대 그의 역사서술과 사학사상은 고려시대의 전통을 충실히 종합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